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상에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,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의 현실화(안 제9조제1항)

- 현재 조기·주간·야간, 하계·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오전·오후·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
- 사용시간 : 오전 08:00 ~ 12:00, 오후 13:00~17:00, 야간 18:00~22:00

나. 성주군체육관 및 야구장 사용시간의 현실화
(안 제10조제1항 【별표 1】,【별표 2】 야구장 사용료 비고란)

- [별표1] 전용료의 사용목적 중 체육이외일반사용의 조기사용 (03:00~07:00) 삭제
- 현행 4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야구장 1회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개정하여 야구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

다.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서규정 신설(안 제24조제3항)

-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의 근거규정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중 “고등학생”을 “중·고등학생”으로 하고,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:00～22:00으로 하며, 오전(08:00～12:00), 오후(13:00～17:00), 야간(18:00～22:00)으로 구분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
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

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협의에 의해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성주군체육관 사용료

(전용료)

사용목적	기 준	요 금	
		평 일	토·일·공휴일
체육경기	오전 08:00 ~ 12:00(1회)	20,000원	30,000원
	오후 13:00 ~ 17:00(1회)	20,000원	30,000원
	야간 18:00 ~ 22:00(1회)	30,000원	45,000원
체육이외 일반사용	<삭 제>		
	오전 08:00 ~ 12:00(1회)	50,000원	70,000원
	오후 13:00 ~ 17:00(1회)	50,000원	70,000원
	야간 18:00 ~ 22:00(1회)	70,000원	100,000원

(이용료)

구 분	기 준	요 금	비 고
개 인	1인 1회(2시간당)	500원	
단 체	1인 1회(2시간당)	350원	

(관람료)

기 준	요 금	비 고
성인 1인 1회	200원	
어린이, 청소년, 군인	100원	

【별표 2】

생활체육시설(테니스,정구,족구장) 사용료

구 분 경기장별	기준	체육행사		체육 이외의 행사		비 고
		평일	토.일.공휴일	평일	토.일.공휴일	
테니스장	주간 (1면당)	15,000	30,000	20,000	35,000	1면 2시간당
정구장		15,000	30,000	20,000	35,000	
족구장		15,000	30,000	20,000	35,000	

※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량의 30% 가산.

축구장 사용료

사 용 목 적	요 금		비 고
	평 일	토.일.공휴일	
체육 경기	100,000	150,000	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
체육 경기 외	200,000	300,000	

야구장 사용료

사 용 목 적	요 금		비 고
	평 일	토.일.공휴일	
체육 경기	50,000	100,000	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
체육 경기 외	100,000	200,000	

신·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~9. (생략)
10.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.
11.~12. (생략)</td><td>제2조(정의)----------

1.~9. (현행과 같음)
10.----------
---------- 중·고등학생 ------
11.~12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>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.
1. 국가 또는 군의 국 경조행사

2.~8. (생략)</td><td>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--------

--------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2.~8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>제9조(사용시간)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하계</th><th>동계</th></tr><tr><td>조기</td><td>03:00~07:00</td><td>04:00~09:00</td></tr><tr><td>주간</td><td>08:00~17:00</td><td>09:00~18:00</td></tr><tr><td>야간</td><td>19:00~23:00</td><td>18:00~23:00</td></tr></table>② (생략)
〈 신 설 〉</td><td>제9조(사용시간)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:00~22:00으로 하며, 오전(08:00~12:00), 오후(13:00~17:00), 야간(18:00~22:00)으로 구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【별표 1】 성주군체육관사용료
(전용료)
<table><tr><th rowspan="2">사용</th><th rowspan="2">기 준</th><th colspan="2">요 금</th></tr><tr><th>평 일</th><th>토·일·공휴일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체육
경기</td><td>오전 08:00~12:00(1회)</td><td>20,000원</td><td>30,000원</td></tr><tr><td>오후 13:00~17:00(1회)</td><td>20,000원</td><td>30,000원</td></tr><tr><td>야간 18:00~22:00(1회)</td><td>30,000원</td><td>45,000원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체육
이외
일반
사용</td><td>조기 03:00~07:00(1회)</td><td>70,000원</td><td>100,000원</td></tr><tr><td>오전 08:00~12:00(1회)</td><td>50,000원</td><td>70,000원</td></tr><tr><td>오후 13:00~17:00(1회)</td><td>50,000원</td><td>70,000원</td></tr><tr><td>야간 18:00~22:00(1회)</td><td>70,000원</td><td>100,000원</td></tr></table>【별표 2】
야구장 사용료
<table><tr><th rowspan="2">사용목적</th><th colspan="2">요 금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<tr><th>평일</th><th>토·일·공휴일</th></tr><tr><td>체육경기</td><td>50,000</td><td>100,000</td><td rowspan="2">1회
사용시간은
4시간 이내</td></tr><tr><td>체육경기외</td><td>100,000</td><td>200,000</td></tr></table></td><td>【별표 1】 성주군체육관사용료
(전용료)
<table><tr><th rowspan="2">사용</th><th rowspan="2">기 준</th><th colspan="2">요 금</th></tr><tr><th>평 일</th><th>토·일·공휴일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체육
경기</td><td>오전 08:00~12:00(1회)</td><td>20,000원</td><td>30,000원</td></tr><tr><td>오후 13:00~17:00(1회)</td><td>20,000원</td><td>30,000원</td></tr><tr><td>야간 18:00~22:00(1회)</td><td>30,000원</td><td>45,000원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체육
이외
일반
사용</td><td>< 삭 제 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오전 08:00~12:00(1회)</td><td>50,000원</td><td>70,000원</td></tr><tr><td>오후 13:00~17:00(1회)</td><td>50,000원</td><td>70,000원</td></tr><tr><td>야간 18:00~22:00(1회)</td><td>70,000원</td><td>100,000원</td></tr></table>【별표 2】
야구장 사용료
<table><tr><th rowspan="2">사용목적</th><th colspan="2">요 금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<tr><th>평일</th><th>토·일·공휴일</th></tr><tr><td>체육경기</td><td>50,000</td><td>100,000</td><td rowspan="2">1회
사용시간은
2시간 이내</td></tr><tr><td>체육경기외</td><td>100,000</td><td>200,000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13조(사용료의 감면)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국가 또는 군의 국 경조행사

2.~5. (생략)</td><td>제13조(사용료의 감면)----------
----------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2.~5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>제15조(입장권)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.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 경조사 행사에 참석하는 차
2.~4. (생략)
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금액은 【별표】와 같다.</td><td>제15조(입장권)①----------
----------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
2.~4. (현행과 같음)
② 〈삭 제〉</td></tr>
</table>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위탁관리) ①~② (생략) ③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. <단서 신설> ④~⑥ (생략)	제24조(위탁관리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다만,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협의에 의해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④~⑥ (현행과 같음)